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0
----------	------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행정 규제적 · 자의적 및 모호한 표현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및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행정 서비스 질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이해관계인” 및 “시장이 필요할 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6조 · 제14조).
- 나. 대지경계안에서의 공사관련 급수장치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급수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9조).
- 다. 급수공사시행에 있어 신청인에게 규정되었던 일부 책임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수도법 제8조 및 제23조
-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 9. 28 - 2005. 10. 18 (20일)

## 기타참고사항

- 수도 급수 조례 개정 계획(2005. 9. 10)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를 “공사로 인하여 급수량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으로 하고, 동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업종은 수도전 1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의 비용 부담분 제외) 또는 제43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4조제2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를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수도시설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수도시설과장 오 왕 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급수담당 이 경 섭
	담당자 성명·전화	함 윤석 (행정 2037)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생 략)</p> <p>1. ~ 4. (생략)</p> <p>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u>다만, 동일 업종은 수도전 1개를 원칙으로 한다.</u></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급수공사의 비용)</p> <p>① ~ ③(생략)</p> <p>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u>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u> 할 수 있다.</p> <p>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p> <p><u>&lt;신 설&gt;</u></p>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lt;삭 제&gt;</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급수공사의 비용)</p> <p>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 -----<u>공사로 인하여 급수량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u> -----</p> <p>⑤----- ----- ----- <u>다만, 동일업종은 수도전 1개를 원칙으로 한다.</u></p>
<p>제7조(공사의 시행)</p> <p>① ~ ④(생 략)</p> <p>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 한다. <u>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u></p>	<p>제7조(공사의 시행)</p> <p>① ~ ④(현행과 같음)</p> <p>⑤ ----- ----- ----- ----- -----<u>&lt;삭 제&gt;</u></p>

현 행	개 정(안)
<p><u>제9조(공사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의 비용 부담분 제외) 또는 제43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의 비용 부담분 제외) 또는 제43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u></p> <p><u>②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u></p>
<p><u>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생 략)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현행과같음) ②-----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u></p>
<p><u>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조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u></p> <p><u>② ~ ③(생 략)</u></p> <p><u>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u></p>	<p><u>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lt;삭 제&gt;</u></p> <p><u>② ~ ③(현행과같음)</u></p> <p><u>&lt;삭 제&gt;</u></p>

## □ 관계법령 발췌서

### ○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수요자의 물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제23조 (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8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 ○ 수도법시행령

제21조 (급수장치의 관리자)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5.7.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② 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